

# 한국체육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18. 9.13. 규정 제77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체육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한다) 직원(박사후 연수생, 인턴연구생 등 비정규직 포함)이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한 연구·조사, 검정·검사 및 교육·훈련 등 관리·운영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다른 기관의 위원회 심의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총 위원수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하며 이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본교 소속 직원 중에서 연구소 장이 추천하는 자
2. 본교 연구소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이해관계가 없으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  
가.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동물보호 및 복지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나.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2호에 따른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 단체가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로서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

다.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학을 담당하거나 동물보호복지학을 담당하는 교수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은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연구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구성 변경 시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4조(기능 및 역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물실험 계획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동물실험 및 동물실험 시설 운영 관련 내부 규정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사후처리 및 동물실험 시설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소의 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동물실험 시설 종사자 및 실험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③ 위원회는 동물실험 시설 운영 실태조사를 매 반기 1회 이상 실시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연구소의

장에게 제출한다.

1. 동물실험 계획 심의 및 승인 현황
2. 동물실험 시설 실태조사 결과(별지 제2호서식) 및 미비점 개선 방안
3. 동물실험, 동물실험 시설, 교육·훈련 등에 관한 권고사항

⑤ 위원회는 최소 연1회 이상 위원회에서 승인된 동물실험의 지도·점검 및 동물실험과 관련된 내부 불만족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결과(별지 제3호서식)를 연구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연구소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의 내용을 정리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국립수의과학 검역원장에게 해당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연구소의 동물실험 또는 실험동물 관련업무 실무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행정업무를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 지원 및 관리
2. 신규 위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및 훈련
3. 회의록작성 및 동물실험 시설 실태조사 보고 등 기록

**제7조(회의)** ① 위원회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1명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전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장소 및 안전을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전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사전검토 등)** ①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전을 미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한 간사는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이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심의방법·심의평가기준 등)** ①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동물실험계획서·동물실험계획재승인서·동물실험계획변경승인서 중 해당하는 별지 서식과 필요한 자료를 연구소 내부 인터넷 망 또는 서면으로 동물실험 시작 15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동물실험 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과제에서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2. 연속과제에서 년차마다 다른 동물실험을 실시해야 할 때 당해년도에 해당하는 동물

실험인 경우

3. 기존에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제4항 각 호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완료된 과제에 추가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③ 위원회는 1년 단위로 동물실험 계획을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매년 동일한 동물실험이 반복되는 동물실험 계획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최대 3년간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과제 책임자는 최초 승인 다음연도부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재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미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또는 제7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간사가 수행하는 사전검토에 의하여 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위원장이 승인할 수 있다.

1. 비 생존 수술에서 생존수술로 변경
2. 동물 중 변경 또는 사용 개체수의 50% 이하 증가
3. 시료 채취 및 투여, 동물실험 장소의 변경
4. 진정·진통·마취 방법
5. 안락사 방법
6. 과제책임자 또는 실험수행자 변경
7. 실험기간의 변경 또는 3개월 이내의 실험기간연장
8. 그 밖에 실험방법의 변경

⑤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전을 심의·평가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실험의 필요 근거
2.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 여부
3.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여부
4. 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개체수의 적정성 여부
5. 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 적정성과 인도적 종료시점의 합리성 여부
6. 실험동물의 고통 및 스트레스 적정성 여부 및 감소 방안 적정성 여부
7. 「동물보호법」 제23조제6항의 준수 여부
8.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실험에 관련된 지식 및 훈련 이수 정도
9. 그 밖에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전 중 동물실험 계획이 수반되는 안전에 대하여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평가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위원은 안전별로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승인 받은 동물실험계획의 변경에 대한 승인 여부를 의결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⑦ 모든 동물 구입 및 실험은 위원회의 동물실험계획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승인을 받기 전 실시된 동물실험에 대해서는 심의·평가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심의를 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침을 마련

하고 실험자로 하여금 준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심의결과 보고)**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연구소의 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된 안전에 대해서는 승인번호를 부여하여 과제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필요 시 추가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과제책임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외·회피)** 과제책임자는 특정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당해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위원장에게 심의 이전 항시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반드시 제외하여야 한다.

1. 위원이 당해 심의 안전에 관하여 연구·개발 또는 이용 등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여하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심의 안전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제12조(점검 및 불만사항 처리 등)** ① 위원회는 동물실험계획 승인 후 최소 연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간사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1. 승인된 방법에 따른 동물실험 실시 여부 확인
2. 동물실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논의 및 실험자 등의 질문사항에 대한 검토
3. 동물실험과 관련된 불만사항 접수 및 정당한 불만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② 위원회는 승인된 계획과 일치하지 않은 방법으로 진행 중인 실험에 대하여 승인 철회 또는 실험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승인된 동물실험 절차를 따르지 않는 직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치 할 수 있다.

1. 상담 및 특별교육
2. 경고장
3. 동물 사용 및 실험수행에 대한 일시적 또는 제한적 취소

④ 위원장은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지체 없이 연구소의 장에게 보고한다. 간사가 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대신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즉시 위원장과 연구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촉 위원, 이해관계인 및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회의참석 및 자문 등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공개)** ①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입수하려는 경우 위원회를 거쳐 연구소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40조에 따른 동물 보호감시원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기록 유지 및 보관)** 위원회는 작성된 회의록과 동물실험계획서·심의평가서 등 관련 자료는 해당 동물실험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그 외 기록도 3년간 보관하도록 한다.

**제16조(조치요구)** 위원장이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연구소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사항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제772호, 2018. 9. 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동물실험 시설 실태조사표

조사일자:       년   월   일  
조 사 자:                               (인)

### <실사 기준>

1. 시설기준 적합성; 온도, 습도, 환기횟수, 조도, 소음, 암모니아 가스 등
2. 사육용 기자재 적합성; Rack, cage, 물병, 자동급수 장치 등
3. 사육준비용 기자재 적합성; 싱크대, 멸균기, 청소용구 등
4. 깔짚, 사료, 물 등의 적합성 ; 보관상태, 해충유무, 유통기한 준수 등
5. 케이지 당 사육두수의 적합성
6. 위생상태 ; 동물실 내 위생상태, 케이지 상태 등

### <시설별 조사내용>

시설명 (번호)	지적사항*

\* 지적사항이 많으면 별지 사용

20    년    월    일

한국체육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 \_\_\_\_\_ (서명)

# 동물실험 실태조사표

조사일자:       년    월    일  
조 사 자:               (인)

## <조사 기준>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서 준수 여부를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과제별로 조사한다.

1. 과제책임자, 동물실험담당자 ; 변경 여부
2. 실험형태 ; 재료채취, 외과적 처치, 유전·육종, 방사선 조사, 감염, 발암, 행동관찰 등
3. 특별한 주거 및 사육조건 준수 여부
4. 실험기간 ; 승인 전 실험 착수, 기간 종료 후 실험 지속 등
5. 사용 동물 ; 동물 종, 계통, 구입처, 품질, 규격, 사용 수 등
6. 실험방법(프로토콜) 준수 여부
7. 진정·진통·마취제 ; 사용방법, 해당 약제 구입 및 사용 내역, 수행자 등
8. 인도적 종료시점 준수 여부
9. 안락사 및 사체처리 ; 방법, 해당 약제 구입 및 사용 내역, 수행자 등
10. 동물실험과 관련된 불만사항
11. 기타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서 내용의 준수 여부

## <과제별 조사내용>

일련 번호	승인번호	과 제 명	과 제 책임자	지적사항 및 불만사항*

\* 내용이 많으면 별지 사용

20    년    월    일

한국체육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 \_\_\_\_\_(서명)





4. 동물실험절차 (동물종류별로 기입)

(2-앞면)

	투여(접종)물질	용량 및 횟수	투여(접종)방법	보정법
실험방법	투여(접종)물질의 특성	<input type="checkbox"/> 생물학적위해물질 (재조합DNA 투여등) <input type="checkbox"/> 바이러스 <input type="checkbox"/> 세균 <input type="checkbox"/> 백신 <input type="checkbox"/> 기타( ) (특성에 대해 자세히 기술)		
	투여물질이 실험동물에 미치는 영향			
	투여물질이 환경노출시 미치는 영향			
	시료채취(부위 및 방법)	(채혈의 경우 부위, 양, 횟수, 시기 기입)		
	실험동물의 고통경감 (동물실험의 범주 D, E에 해당하는 경우만 기입)	<input type="checkbox"/> 진정 <input type="checkbox"/> 진통 <input type="checkbox"/> 마취		
수의학적관리	사용마취제 및 용량, 방법	(약물명, 용량, 경로 기입) (향정신성약물은 식약청의 마약류사용허가자격 기입) (근이완제사용시 사용이유 제시)		실시자 ( )
	외과적처치(해당시 작성)			
	인도적 실험종료 기준	(동물실험중 동물의 고통을 종료하기위해 연구목적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실험을 일찍 종료하는 기준)		
	안락사	<input type="checkbox"/> 주사마취제 (약물명: , 용량: , 경로: ) <input type="checkbox"/> 흡입마취제 (약물명: , 농도: ) <input type="checkbox"/> 이산화탄소가스(농도: ) <input type="checkbox"/> 경추탈구 <input type="checkbox"/> 전기충격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사육시설	<input type="checkbox"/> ( 과)실험동물사 <input type="checkbox"/> 해외전염병과 차폐실험실 <input type="checkbox"/> 신중질병연구동 차폐실험실 <input type="checkbox"/> 독성화학과 배리어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사육시설 및 관리	주거 엔리치먼트 (Enrichment)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 (설치류의 경우 작은 tube나 기둥, 토끼는 나무토막, 돼지이상은 장난감등)		
	실험을 위해 반입하여야 하는 물품 또는 장비	(케이지, 사료, 깔짚 등)		
	실험자를 안전을 위한 보호 물품 및 대책	(글러브, 마스크, 방역복, 장화등)		
	사료·음수·운동 제한 (복수선택가능)	<input type="checkbox"/> 사료 제한 <input type="checkbox"/> 음수제한 <input type="checkbox"/> 운동제한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제한사유: )		
	실험종료후관리	<input type="checkbox"/> 소각 <input type="checkbox"/> 기타( )		
	적용소독제			

\* 첨부 : 연구계획서(1장 요약본)

\* 동물실험계획의 심의·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물실험연구계획서와 기타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 동물실험계획 재승인신청서

기 승인번호		실험기간	20 . . . . ~ 20 . . . .		
과제명 (한글/영문)					
실험목적					
승인실험기간	20 . . . . ~ 20 . . . . 총 ( 2, 3 )년 승인 중 ( 2, 3)년제				
동물실험계획	<input type="checkbox"/> 변경없이 계속 <input type="checkbox"/> 변경후 계속 (필요시 변경승인신청서 함께 제출) <input type="checkbox"/> 기타 (동물실험계획의 취소 등의 경우 그에 대한 설명)				
승인 받은 실험 계획	1년차	(해당 년차의 사용 실험동물 종류 및 마리수, 안락사 방법 기재)			
	2년차				
	3년차				
역할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교육이수번호
과제책임자					
실험수행자					
실험변경사항	최초 승인받은 실험계획과 다른 변경사항 있을 경우 간략히 기재				



##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

### 1. 동물실험계획 관련사항

접수번호		평가차수	제 차
기승인번호		평가일	. . .
과제명			

### 2.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심의평가			
		그렇다	보통	아니다	해당없음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험기간의 적절성</li> <li>· 실험자의 교육이수 및 훈련도와 경험도의 적정성</li> </ul>				
동물실험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목적과 동물실험 필요성의 적합성</li> </ul>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Replac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실험의 대체방법의 충분한 검색 및 고려</li> <li>· 동일한 실험물질에 대하여 실험한 정보의 중복여부의 검색</li> </ul>				
동물실험의 감소 (Redu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목적과 실험 설계된 동물 수의 일치성</li> <li>· 정확한 통계학적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실험군 크기 선택</li> <li>· 실험모델 선정의 적합성(동물계통 및 종류)</li> </ul>				
동물실험의 개량 (Refin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험동물의 고통과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의 적절성</li> <li>· 환경 엔리치먼트(Enrichment) 고려 여부</li> <li>· 고통경감을 위한 진정·진통·마취제 사용 고려여부</li> <li>· 인도적 종료시점(Humane endpoint)의 적절성</li> </ul>				
수의학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정·진통·마취제 용량 및 용법의 적절성</li> <li>· 투여(접종)물질의 용량 및 용법의 적절성</li> <li>· 외과적 처치 및 처치 후 관리의 적절성</li> <li>· 안락사 방법의 적절성</li> </ul>				
실험종료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험물질 및 실험동물 처리방법의 적절성</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보호법 제23조제6항에 해당되는 경우 근거의 타당성</li> <li>· 실험물질이 동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li> <li>· 실험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li> <li>· 동물실험시 실험자의 안전에 대한 고려</li> </ul>				

### 3. 종합 심의평가의견

종합평가결과	평가 의견	
<input type="checkbox"/> 원안승인 <input type="checkbox"/> 수정후승인 <input type="checkbox"/> 수정후재심 <input type="checkbox"/> 불승인		
	평가위원	(인)

## 동물실험계획승인서

### 1. 과제책임자

성명	소속	직급	연락처	교육승인번호

### 2. 동물실험계획서

접수번호	
연구과제명	
실험기간	
실험동물 종류 및 사용 마리 수	

### 3. 승인

심의일자	
승인일자	
승인번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는 상기의 동물실험계획을 승인합니다.

20 . . .

한국체육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 (인)

(영문승인서 예시)

# IACUC Protocol Approval

## 1. Original protocol information

<b>Protocol Title</b>		
<b>Principal Investigator</b>	<b>Affiliation</b>	
	<b>Name</b>	
<b>Study Period</b>		

## 2. Approval

<b>Review Date</b>	
<b>Approval Date</b>	
<b>Approval Number</b>	

**This animal care and use protocol was reviewed and approved by the IACUC at KNSU Institute of Sport Science.**

**20 . . .**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Institute of sport sciences**

**Chairperson**

*signature*